

35. 터키(Turkey)

1. 근거법 제정 시기

- 최초법 : 1949년(노령), 1957년(노령, 장애, 유족)
- 현행법 : 1964년(사회보험, 1965년 시행), 1971년(자영자), 1983년(농업근로자 사회보험, 1984년 시행), 2006년(사회보장기구), 2006년(사회보장 및 일반건강보험, 2007년 및 2008년 시행), 2008년(사회보장)

2. 제도형태

- 사회보험제도

3. 적용대상

- 당연적용 : 공무원을 포함한 근로자, 자영자, 정규직 가사근로자
- 임의적용 : 가능
- 적용제외 : 비정규직 가사근로자
- 특별제도 : 은행, 보험회사, 상공회의소, 증권거래소 근로자

4. 재원조달

- 가입자 : 월 총 가입소득의 9%
- 자영자 : 월 총 가입신고소득의 20%
- 사용자 : 월 총 가입임금총액의 11%
- 정 부 : 징수된 총 보험료의 25%; 결손 보전; 사용자로서 보험료 납부
 - ※ 보험료 산정을 위한 월 최저소득은 법정 월 최저임금
 - ※ 보험료 산정을 위한 월 최고소득은 법정 월 최저임금의 7.5배
 - ※ 법정 월 최저임금은 2,029.5리라

5. 급여종류별 수급요건

- 노령급여
 - 노령연금
 - 보험료 납부기간이 7,200일(공무원과 자영자는 9,000일) 이상인 남성 60세(2036년에서 2044년까지 65세로 점진적 상향), 여성 58세(2036년에서 2048년까지 65세로 점진적 상향) 도달자; 보험료 납부기간이 5,400일 이상인 남성 63세(2036년에서 2044년까지 65세로 점진적 상향), 여성 61세(2036년에서 2048년까지 65세로 점진적 상향) 도달자

- 다음의 경우 수급연령 제한 없음; 보험적용 근로 시작 전 장애(60% 이상)가 발생하고 보험료 납부기간 3,600일을 포함하여 가입기간이 15년 이상인 자; 보험적용 근로 시작 전 장애(50~59%)가 발생하고 보험료 납부기간 4,320일을 포함하여 가입기간이 16년 이상인 자; 보험적용 근로 시작 전 장애(40~49%)가 발생하고 보험료 납부기간 4,680일을 포함하여 가입기간이 18년 이상인 자
- 군인, 경찰, 55세 이상이며 조로(prematurely aged)인 자, 광부에게는 특별 조건 적용
- 상시간병이 필요한 장애가 있는 자녀를 둔 어머니는 정상퇴직연령보다 일찍 퇴직할 자격이 부여됨
- 특정 조건 하에서 고용 지속 가능
- 연기연금 : 공무원, 군인, 경찰의 경우 65세까지 연기 가능. 민간 근로자의 경우 연기제한연령 없음
- 노령연금은 상호협정에 따라 일부 해외 지급 가능
- 노령청산금
 - 노령 또는 장애연금 수급을 위한 납부 또는 가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남성 60세(2036년에서 2044년까지 65세로 점진적 상향), 여성 58세(2036년에서 2048년까지 65세로 점진적 상향) 도달자; 조로(prematurely aged)이며 노령 또는 장애연금 수급을 위한 납부 또는 가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55세 도달자
 - 노령청산금은 상호협정에 따라 일부 해외 지급 가능

○ 장애급여

- 장애연금
 - 보험적용 근로 시작 이후 장애(60% 이상)가 발생하고 보험료 납부기간 1,800일을 포함하여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자. 상시 간호가 필요한 가입자에 대하여 가입기간 요건 면제
 - 상시간병보조금 : 가입자가 일상생활 영위를 위해 타인의 상시간병을 필요로 하는 경우 지급
 - 장애연금은 상호협정에 따라 일부 해외 지급 가능

○ 유족급여

- 유족연금
 - 사망자가 사망 당시 노령 또는 장애연금을 수급 중이었거나 수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또는 보험료 납부기간 900일(공무원이나 자영자의 경우 1,800일)을 포함하여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인 자의 보험료 납부기간이 있는 자
 - 수급가능 유족 : 배우자, 18세(대학 진학 이전의 학생인 경우 20세, 대학생인 경우 25세) 미만 자녀, 장애가 있고 실업상태인 18세 이상

아들, 보험적용 근로에 종사하지 않거나 본인의 권리로 인한 연금을 받지 않고 있는 미혼이거나 미망인이거나 이혼한 딸, 피부양 부모

- 배우자 또는 딸에 대한 유족연금은 재혼시 중지됨
- 혼인일시금 : 미망인 또는 사망자의 자녀 재혼시 지급
- 유족연금은 양자협정에 따라 일부 해외 지급 가능
- 유족청산금
 - 사망자가 사망 당시 노령 또는 장애연금 수급을 위한 납부 또는 가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급
 - 유족청산금은 양자협정 하에 일부 해외 지급 가능
- 장제비
 - 가입자 또는 노령·장애연금 수급자 사망 시 지급

6. 급여종류별 지급액

○ 노령급여

- 노령연금
 - 가입자의 월 평균소득에 지급률을 곱하여 산정
 - 월 평균소득=가입자 생애 총 소득÷총 보험료 납부일수×30
 - 지급률은 보험료 납부기간 360일당 2%(360일 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비례 감소)로 최대 90%
 - 2008년 10월 1일 이전 최초 가입자는 특별산정방식 적용
 - 월 최소 노령연금액은 1,402리라(2017년). 공무원의 경우 1,871리라(2017년)
 - 연기연금 : 연기연금 지급
 - 급여 조정 : 매년 1월과 7월에 소비자 물가지수에 따라 조정
- 노령청산금
 - 총 납부보험료를 일시금으로 지급

○ 장애급여

- 장애연금
 - 가입자의 월 평균소득에 지급률을 곱하여 산정
 - 월 평균소득=가입자 생애 총 소득÷장애 발생 전까지 총 보험료 납부일수×30
 - 지급률은 보험료 납부기간 360일당 2%(360일 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비례 감소)로 최대 90%. 보험료 납부기간이 7,200일(공무원 및 자영자는 9,000일) 미만인 가입자의 경우, 7,200일(공무원 및 자영자는 9,000일) 동안 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률 산정

- 2008년 10월 1일 이전 최초 가입자는 특별산정방식 적용
- 상시간병보조금 : 가입자 월 평균소득의 10% 지급
- 급여 조정 : 매년 1월과 7월에 소비자 물자지수에 따라 조정

○ 유족급여

• 유족연금

- 배우자연금 : 사망자가 수급 중이었거나 수급요건을 충족한 노령 또는 장애 연금액의 50%를 배우자에게 지급. 자녀가 없고 근로를 하지 않거나 연금을 수급하지 않는 미망인의 경우 75% 지급
- 고아연금 : 사망자가 수급 중이었거나 수급요건을 충족한 노령 또는 장애 연금액의 25%를 각 수급가능 고아에게 지급. 완전고아인 경우 50% 지급
- 기타 수급가능 유족 : 사망자가 수급 중이었거나 수급요건을 충족한 노령 또는 장애연금액의 25%를 피부양부모에게 지급
- 혼인일시금 : (재)혼인시 유족연금 2년치를 일시금으로 지급
- 유족급여 최대 합산액은 사망자가 수급 중이었거나 수급요건을 충족한 노령 또는 장애연금액의 100%. 다만, 총 유족급여 합산액이 사망자 연금액의 100%를 초과하더라도 65세 이상 피부양부모는 사망자 연금액의 25% 수급 가능
- 2008년 10월 1일 이전 최초 가입자는 특별산정방식 적용
- 최저 연금 지급

• 유족일시금

- 일시금이 일정에 따라 유족 간에 균등 지급됨

• 장제비

- 일시금(594리라) 지급
- 연금액 조정 : 매년 1월과 7월에 소비자 물자지수에 따라 조정

7. 관리운영기관

○ 노동사회보장부(Ministry of Labor and Social Security)

- www.csgeb.gov.tr
- 전반적 감독

○ 사회보장공단(Social Security Institution)

- www.sgk.gov.tr
- 보험료 징수 및 제도 운영